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3. 6. 13.(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동 의원 외 14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이한동 의원 외 14명
- 제안일 : 2023. 5. 23.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73)

2.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안 제3조)
- 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5. 18. ~ 5. 23.(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 안 제7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2018년부터 시작된 N번방 사건, 이를 모방하여 성 착취물을 공유했던 박사방 사건 및, 유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총 7,979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23만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25%가 증가한 수치임.
 -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총 12,727건 중 불법촬영이 2,684건(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불안 3,836건(30.1%), 유포 2,481건(19.5%), 유포협박 2,284건(18.0%) 순임
 -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6개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연번	단계	사업내용
1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캠페인 운영'
2		초, 중학생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3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온서울세이프'운영
4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운영
5	조기개입	아동, 청소년 긴급 신고 상담창구 운영
6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성착취예방 및 조기개입프로그램 운영
7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사업 운영
8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3. 비용추계서

(앞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예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제①항 제3호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
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피해 영상물 삭제 및 법률, 소송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수행 중(광역차원에서 진행 중)]

나. 비용추계기간: 2024. 1. ~ 계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구비	5,000	5,000	6,000	6,000	6,000	28,000
	소계(b)						
□ 총 비용(a-b)		5,000	5,000	6,000	6,000	6,000	28,000

4. 재원조달 방안: 마포구 구비 전액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방은영
연락처	02-3153-892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아동, 청소년, 일반인 대상)